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44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입학처), 02-970-6832

제정 2015. 10. 13.

개정 2016. 9. 1.

개정 2021. 10. 18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 법」제10조에 따라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"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"(이하 "선행학습 영향평가"라 한다)란 「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특별법"이라 한다)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실시하는 논술, 필답고사, 면접・구술고사 등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은 없는지 매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평가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구성)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고, 입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(개정 2016. 9. 1.)
-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내·외 전문가 중에서 입학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6. 9. 1.)
-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입학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16. 9. 1.)
-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
 - 2.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출제 여부에 관한 사항
 - 3.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향후 입학전형 반영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(영향평가 시행 및 결과 반영)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(수시 및 정시)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」에 따른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7조(결과 공시)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8조(그 밖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

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제298호, 2015. 10. 1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339호, 2016. 9. 1.)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제644호, 2021. 10. 1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